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11. 7 선고 2018가단70926 판결 [기계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9. 8. 29.

판결 선고 2019. 11. 7.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에게 37,9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. 29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,9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

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피고 C은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'D'라는 상호를 사업자등록을 하여 섬유제품판매업을 하는 자인데, 2016. 10.경 원고에게 원고가 나염기계를 매수하여 섬유제품을 1차 임가공하여 피고 C에게 납품하면 피고 C이 섬유제품에 대한 영업 및 유통 일체를 담당하겠다고 제의하였고, 그러면서 피고 C은 2016. 10. 13.경 E이 경영하는 F로부터 열판 및 전사프레스 1식(이하 '이 사건 기계'라 한다)에 대하여 기계대금 37,950,000원의 견적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.
- 2) 원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,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. 12. 13.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매수한 후 가공한 물품을 피고 C에게 납품하되 손익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기계를 피고 C이 즉시 재매수하기로 약정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하였다.
- 3)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2017. 1. 6. 30,000,000원을 피고 C이 사용하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, 2017. 4. 11. 4,000,000원, 2017. 7. 28. 3,950,000원을 F에게 각 송금하였다.
- 4) 그리고 원고는 피고 C과 논의한 사업을 위해 2017. 1. 2.경 '주식회사 G'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다.
- 5) 그러나 피고 C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법인의 사업상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 법인은 2018. 2. 27.경 폐업하였다.
- 6)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재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,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37,950,000원(30,000,000원 +

4,000,000원 + 3,950,000원)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,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,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

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C은 원고에게 37,9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. 1. 29.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비율(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. 6. 1.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%를 적용)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.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D의 사업주인 피고 B도 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기계의 재매수대금 37,95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, 피고 C이 배우자인 피고 B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섬유제품판매업을 한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2017. 1. 6. 30,000,000원을 피고 C이 사용하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인정사실만으로 는 피고 B가 D라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거나,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,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이병삼